**선 교 사 계 약 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와 본 교회 소속 선교사 \_\_\_\_\_\_\_\_\_\_/\_\_\_\_\_\_\_\_\_\_\_\_\_\_는 아래의 사항을 합의하여 계약하고, 쌍방이 이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 날인하여 4통을 작성하여 본인, 소속교회, 연회, 선교국에서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선교사의 자격 규정**

1) 상기 선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지방 교회의 소속 선교사로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와 함께 선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 할 의무가 있다.

2) 상기의 선교사는 감리교회와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국외선교사 관리 규정” 에 따라 감리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선교사 임지와 사역**

1) 상기 선교사는 \_\_\_\_\_\_\_\_\_\_\_\_\_\_\_\_\_에 상주한다.

2) 상기 선교사는 선교지역 내에서 현지인과 교포를 대상으로 전도, 교회설립 및 지원, 현지교회의 지원과 협력사업, 지도자 훈련 및 양성, 구제와 봉사 등의 제반 선교사역에 힘쓴다.

3) 선교사는 임의로 귀국, 선교지역 이동, 이탈을 할 수 없다. 단, 앞의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소속교회와 선교국의 동의 하에 일정기간 가능하다.

**3. 선교사 임기 및 안식년**

1) 선교사의 임기는 4년을 1차 기본 임기로 하고 다음 임기는 전 임기가 종료되었을 시에 다시 협정하되, 2차 임기 부터는 6년으로 한다.

2) 선교사는 4년을 사역한 후 6개월 이내, 2차 임기사역 후 1년 이내의 안식년을 갖는다.

3) 안식년 시에는 본국에 귀국하여, 휴식, 선교보고, 연장교육, 다음 임기에 대한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에서의 연구 및 활동은 안식년 기간범위 내에서 선교국 및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선교사와 신변과 활동에 문제가 되거나 선교사의 임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선교국과 본 교회(단체)가 협의하여 선교사를 소환할 수 있다.

**4. 선교사를 위한 재정 지원**

1) 본 교회(단체)에서는 아래와 같이 선교비를 매월 책임지고 지급한다.

생 활 비: 월 $ ×14개월 (상여금 2개월)

선교활동비: 월 $ ×12개월

자녀교육비: 월 $ ×12개월

퇴직적립금: 월 $ ×1개월(생활비의 1개월분)

2) 본 교회(단체)는 선교사 파송 시 보험에 가입해주고 부임 시 왕복 항공료와 이사 비용을 부담을 한다.

3) 본 교회(단체)는 특별 선교비 지원과 관련하여 선교사가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한다.

4) 현지 고용인을 불가피하게 고용하게 될 때에는 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비용 지급 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단, 단기 고용 시에는 사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

5) 선교사의 안식년 기간 동안의 선교비는 위의 1)항에서 선교활동비를 제외한 비용을 준하여 지원한다.

6) 선교사에 대한 제 후원예산은 매 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본 교회에서 조성한다.

7) 기타 선교회원으로부터 받은 선교후원비나 특정 목적을 지정한 헌금이 있을 경우 본 교회(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선교사보고**

1) 선교사는 본부와 연회, 후원교회에 연 2회 이상 반드시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2)선교사 보고는 서식이나 선교편지 등으로 하되, 선교지 상황, 선교사와 가족 사항, 활동사항 계획, 기도 제목과 건의사항, 선교활동비 대한 재정보고 (영수증 사본 첨부)를 포함해야 한다.

**6. 기타**

1) 선교사와 본 후원교회(단체)는 이 예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이행하며, 선교국은 이의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만일 위의 내용을 고의로 어기거나 시행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른 행정 처리를 하도록 한다.

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수시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년 월 일**

**교회 담임목사 인**

**선 교 사 인**

**선 교 사 인**

**선 교 국 인**